

교육세 과세표준신고서(금융업 등)

신고기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① 신고인	① 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성명)	④ 생년월일	
	⑤ 사업장 소재지		⑥ 전자우편주소
	⑦ 주업종	⑧ 종류코드	⑨ 전화번호
	⑩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인 경우 (모법인이 금융·보험업자인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연결모법인 []연결자법인
	⑪ 모법인명	⑫ 모법인 사업자등록번호	⑬ 모법인 종류코드
	⑭ 모법인 사업장 소재지		

② 신고내용

⑮ 업종	⑯ 총수익금액	⑰ 과세제외 수익금액	⑱ 비과세 수익금액	⑲ 과세표준 (⑯ - ⑰ - ⑱)	⑳ 세율	㉑ 산출세액
합 계						㉒
㉓ 무(과소)신고, 초과환급 가산세액						
㉔ 납부지연가산세액						
㉕ 기납부세액						
㉖ 차감납부세액 (㉒ + ㉓ + ㉔ - ㉕)						

③ 국세환급금 계좌 신고

3 국세환급금 계좌 신고	27 거래은행	은행	지점
	28 계좌번호		

「교육세법」 제9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이
오
도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가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관리번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 방법

※ 이 서식은 전산 입력되는 서식이므로 다음 각 호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신고인 인적사항란은 신고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의 경우(모법인이 교육세납세의무자인 금융·보험업자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⑩~⑭란을 작성합니다.

2. ⑧, ⑬란의 종류코드는 금융·보험업자의 종류에 따라 해당 번호를 적습니다.

금융·보험업자의 종류	코드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0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0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0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0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05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교육세법 시행령」 제1조에 따른 외국보험회사를 포함합니다) 및 같은 법 제91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표 코드 01부터 코드 05까지 및 코드 07부터 코드 1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0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0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0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0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10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환전영업자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1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1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	15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합니다)	16

3. ⑯ 총수익금액은 [별지 제2호서식 부표]의 총수익금액란의 금액을, ⑰ 과세제외 수익금액은 [별지 제2호서식 부표]의 과세제외 수익금액란의 금액을, ⑱ 비과세 수익금액란은 [별지 제2호서식 부표]의 비과세수익금액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4. ㉓ 국세환급금 계좌 신고란: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금을 송금받을 신고인의 예금계좌를 적습니다.

계정과목별 수익금액 · 과세제외 · 비과세 명세표

계정과목	코드	금액	계정과목	코드	금액
I. 총수익금액(II + III + IV)	01		III. 비과세 수익금액	35	
II. 과세대상 수익금액	02		1. 공익신탁재산수익	36	
1. 수입이자	03		IV. 과세제외 수익금액	40	
2. 수입할인료	04		1. 국외사업장수익	41	
3. 수수료수익	05		2. 익금으로 보지 않는 자산 · 부채평가익	77	
4. 배당금수익	06		3. 비용환입액	78	
5. 보증료수익	07		4. 채권매각익 또는 상환익 중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 상당액	79	
6. 유가증권의 매각익 · 상환익[(1) + (2)]	94		5. 그 밖에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 · 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	80	
(1) 유가증권(국채를 제외한다)의 매각익 · 상환익	08		6. 국고보조금	43	
(2)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의2 (① - ②)	84		7. 보험차익	44	
①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의2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합계	85		8. 채무면제익 및 자산수증익	81	
②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의2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합계	86		9. 휴면예금 소멸시효완성익	82	
7. 위탁자보수	10		1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	48	
8. 이익분배금	11		11. 국외의 보험회사가 인수한 보험으로서 재보험계약에 따라 국내 수입된 보험료	49	
9. 신탁보수	12		12. 보험회사가 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재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출재보험수수료 · 출재이익수수료 · 이재조사비	50	
10. 보험료수익[(1) - (2)]	13		13.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제7호의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 수수료	53	
(1)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제1호	14		14.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8호의 다른 회사 분배수수료	54	
(2)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제2호	15		15.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9호의 국외 투자중개업무 수수료	55	
11.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제5호[(1) + (2)]	73		16.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제10호의 금액[(1) + (2) + (3)]	87	
(1)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제5호가목(① - ②)	74		(1)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제10호가목의 발행자 지급수수료	56	
①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가목의 거래 및 평가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합계	75		(2)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제10호나목의 가맹점수수료	88	
②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가목의 거래 및 평가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합계	76		(3)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제10호다목의 청구할인 금액	89	
(2)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제5호나목(③ - ④)	16		17.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1호의 보증료, 무역어음 재할인 이자, 비거주자로부터 수입한 이자 및 수수료	57	
③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나목의 거래 및 평가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합계	17		18. 금융리스 외의 리스로 인한 리스료 중 취득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58	
④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나목의 거래 및 평가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합계	18		19.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 금액	59	
12. 수입임대료	19		20.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2호[(1) + (2)]	60	
13. 고정자산처분익	20		(1)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2호가목의 거래 수익금액	61	
14. 유질물처분익	23		(2)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2호나목의 거래 수익금액	62	
15. 수입대여료	24		21.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3호[(1) + (2) + (3)]	90	
16.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제7호의2	83		(1)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3호가목의 대출 이자수익 또는 수수료	91	
17. 기타영업수익	25		(2)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3호나목의 대출 이자수익	92	
18. 기타영업외수익	26		(3)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3호다목의 대출 이자수익	93	